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의 변경으로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
 - 안 제8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 마련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라. 기 타 : 신규대비표 붙임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로, “**제10조**”를 “**제23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으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사업비를**”을 “**사업에 대해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해서도**”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 제1항부터**”를 “**장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u>법 제16조제1항 제11호</u> 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 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 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 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을 말한다.	1.----- ----- <u>법 제52조제1 항제8호</u> ----- ----- ----- ----- ----- -----.
2. “아동”이란 <u>법 제2조제1호</u> 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 한다.	2.----- <u>법 제3조제1 호</u> ----- -----.
3. “보호자”란 <u>법 제2조제3호</u> 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 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 한다.	3.----- <u>법 제3조제3 호</u> ----- ----- ----- ----- -----.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 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u>법 제3조제11호</u> 에 따라-----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생략)

제4조(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법
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
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
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
조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
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
에-----
-----.

5.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 설치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
4조-----제23조-----

-----.

제8조(경비의 지원) -----

-----범위
안-----사업에
대해 경비를-----.

1. ~ 5. (현행과 같음)

6.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4조(지도·감독)

<삭제>

②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
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
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
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
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
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
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
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 (생 략)

② -----대
해서-----

--.

③ -----장은-----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
용한다.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

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실·과·소		가족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용 학
	담 당	김 춘 섭
	담 당 자	이 성 민 (480-6583)